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회)	

행정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김민석 (법제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개별 법률에서 채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그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행정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제20824호, 2025. 3. 18. 공포, 2026. 3. 19. 시행)됨에 따라, 과징금 채납가산금 부과율 및 부과기간의 상한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 등) ① 법 제28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”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과징금의 1만분의 4의 율을 말한다.

② 법 제28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간”이란 60개월을 말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조의2(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 등) ① 법 제28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”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과징금의 1만분의 4의 율을 말한다.</u> <u>② 법 제28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간”이란 60개월을 말한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0 - 6599